

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- 다 음 -

1.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내역

| 구 분 | 성 명 | 직 위 |
|--------|-----|------|
| 이사회 의장 | 김두용 | 대표이사 |
| 선임사외이사 | 주민석 | 사외이사 |

2.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

→ 효율적인 이사회 소집 및 회의 진행을 위함

3. 이사회 결의일(선임일)

→ 2026년 2월 12일

2026년 02월 12일

주식회사 머스트자산운용

대표이사 김 두 용